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관서에 통지하고 초기화재진압 조치를 하도록 명시〉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0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관서에 통지하고 초기화재진압 조치를 하도록 명시

개정안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그 기관이 초기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생략)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2항에</u>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3항</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음.¹⁾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항구에 메어 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119(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22(舊 해양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²⁾로 접수

1)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

되고³⁾⁴⁾, 119종합상황실에서 관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며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16년에 해양구조신고 전화번호인 122가 소방청 구조신고 전화번호인 119로 통합됨에 따라, 112(구 해양긴급신고)로 신고하여도 소방상황실로 자동으로 연결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실시하는 절차를 거침. 또한, 접수받은 화재 사건의 진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⁵⁾를 통해 공동대응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⁶⁾)⁷⁾.

한편, 선박에 발생한 화재의 진압에 관한 현행 법률에 따른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 ‘항구에 매어둔 선박’의 화재는 소방관서의 관할로⁸⁾, ‘정박⁹⁾’ 중인 선박이나 그 밖에 해상에 있는 선박의 화재는 해양경찰청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음¹⁰⁾¹¹⁾.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 간 신고접수 시스템을 연계한 센터임.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상세 내용은 [참고 1] 참조

6) 조문 내용은 각주 3) 참조

7) 상세한 선박화재 대응절차는 [참고 2], [참고 3] 참조

8)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생략)

9) - 현행 법률들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 5. (생략)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1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2. 6. 10., 2024. 1. 2.>

이는 선박의 경우 연료 등 인화성 물질이 많고 화재가 확산될 경우 항구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등 선박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¹²⁾ 선박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에서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선 등 특수한 장비가 필

-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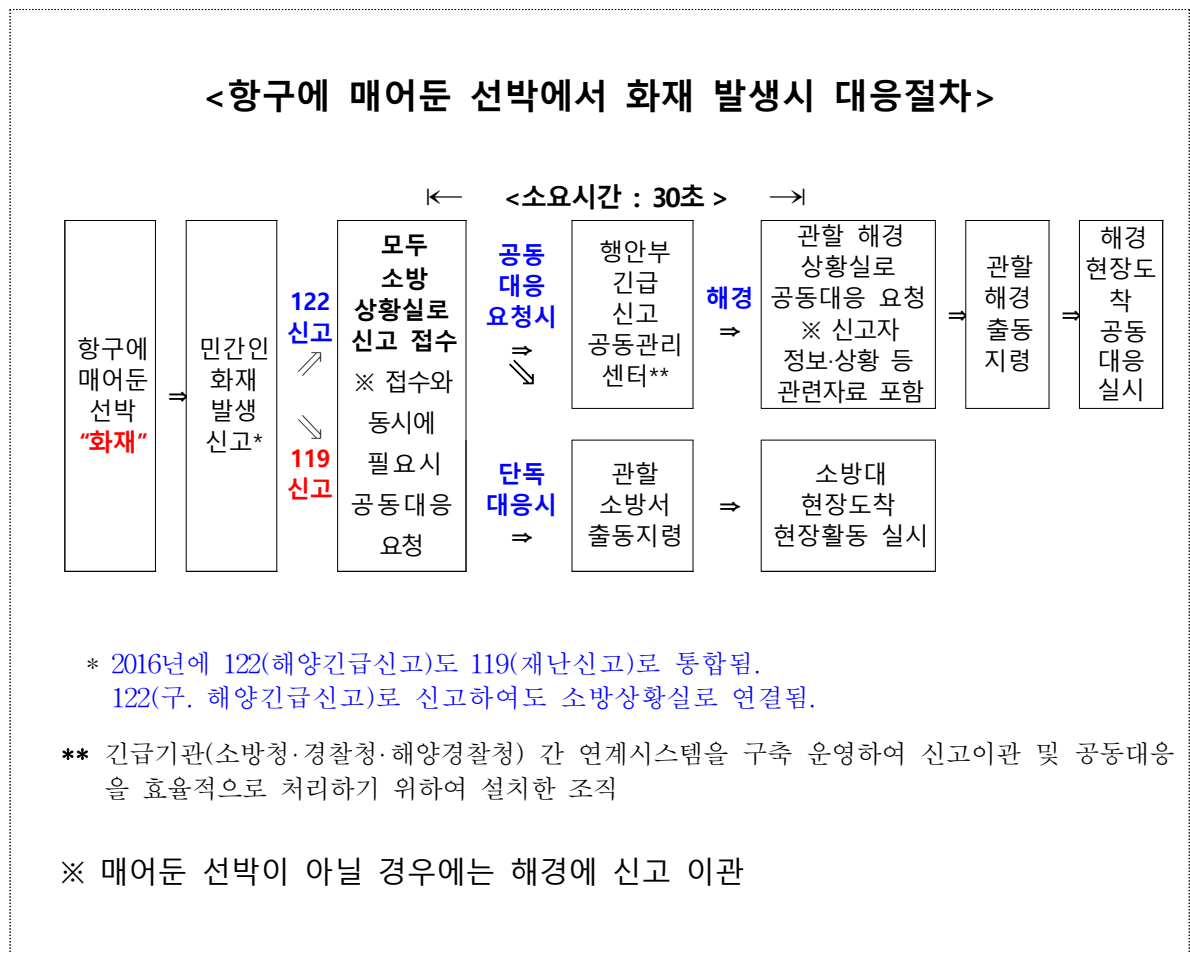
11) 이에 따라 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아닌 정박 중인 선박이나 해상에 있는 선박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있음.

12) 대표적인 사례로 2021.03.23. 새벽 충남 태안의 신진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선박 등 17척이 소실되었음.

(태안 신진항에 불...선박 17척 불에 타_KBS, 2021.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5814&ref=A>)

요하므로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정박 중인 선박 또는 해양에 있는 선박의 화재 진압을 위한 주무관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해됨¹³⁾.



(자료: 소방청)

13) 다만, 육지에서 소방펌프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할 수도 있음. 또한, 소방정대(消防艇隊)가 있는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먼 거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이 소방정대와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활용 신고접수 연계 흐름도>

<공동대응>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으로 신고접수 정보 공유

경찰(신고접수 / 타기관 공동대응 요청) → 센터(사건 데이터 연계) → 소방, 해경(공동대응 접수 및 출동)



<신고이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신고정보 이관

경찰(신고접수 / 타기관 신고이관 요청) → 센터(사건 데이터 연계) → 소방(신고이관 접수 및 출동)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지체 없이 통지함과 동시에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이후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69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25명(사망 14명, 부상 111명)의 인명피해와 966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정박 중인 선박 및 해상의 선박에서는 그동안 921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선박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이후 항구에 매어둔 선박의 화재 발생 현황>

연 도	건 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명)	부상(명)	
계	694	14	111	96,601,827
2019	107	1	26	59,229,321
2020	119	3	22	6,390,872
2021	124	0	10	7,458,678
2022	150	4	19	11,459,455
2023	96	1	13	9,274,921
2024 (6.30. 기준)	98	5	21	2,788,580

(자료: 소방청)

<2019년 이후 해상에서의 선박 화재 사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합 계	132	133	192	172	154	138	921
운항 선박화재	74	42	52	42	69	57	336
정박 선박화재	58	91	140	130	85	81	585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개정안은 항구에 매어져 있거나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¹⁴⁾.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항구에 매어져 있거나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¹⁵⁾)에 따라 소방청·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

15) 조문의 상세 내용은 각주 4) 참조

경찰청·해양경찰청 간에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가 통합·연계되어 운영 중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비록 선박 화재 대응 주관 기관은 화재가 발생한 선박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화재 등 모든 재난 신고가 119 긴급구조 특수전화번호 서비스로 통합되었으므로 선박 화재 신고는 신고자가 소방청(119)과 해양경찰청(122)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모두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되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관서에서 인지한다고 설명함¹⁶⁾.

둘째, 개정안은 화재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직접 초기화

(행안부 홍정호 사무관 053 630 2485)

16) 참고로, 현행 재난대응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재난대응 상 재난 신고, 소관기관 통보, 초동대응 및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등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화재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화재 사실의 통지와 소방대 출동 전 사전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고, 수상에서의 선박등의 화재, 침몰 등 조난사고에 따른 수난구조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재난대응체계 상 재난 신고 등 근거규정 >

구분	「재난안전법」	「수상구조법」	「소방기본법」
재난 신고	§19(재난 신고 등)①	§15(조난사실의 신고 등)①	§19(화재 등의 통지)①
소관기관 통보	§19(재난 신고 등)②	§15(조난사실의 신고 등)③	§20(관계인의 소방활동 등)②
초동대응 및 긴급구조	§37(응급조치) §47(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51(긴급구조)	§13(수난구조의 관할) §16(구조본부 등의 조치)①	§16(소방활동) §20(관계인의 소방활동 등)①
관계기관 간 협조	§49(중앙긴급구조통제단)③ §50(지역긴급구조통제단)③ §51(긴급구조)②	§14(수난구조 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16(구조본부 등의 조치)③	

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은 해양경찰관서 외에 다양한 기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들 기관에 일괄적으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소방에 관한 인력이나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해양경찰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이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¹⁷⁾ 이 법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1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요

※자료: 행정안전부

- (긴급신고전화 통합) 20여개의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긴급신고 112·119, 민원상담 110 세 개 번호로 통합
 - *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신고 전화 일평균 98,609건,
 - * 공동대응 4,500건('23년 기준)
- (통합시스템 구축) 긴급기관(경찰,소방,해경) 간 신고접수시스템*을 연계하여 신고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 구축·운영('16.10월~)
 - * (경찰) 112신고통합시스템, (소방)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해경) 통합신고처리시스템
 - (공동대응) 기관간 공동대응 필요 시 사건정보·위치정보 등 실시간 공유
 - (신고이관) 소관 아닌 신고는 반복설명 없이 해당기관으로 정보 이관
 - ※ 비긴급 신고전화는 110으로 신고이관하여, 민원상담전화 전담 처리
- (대응상황 모니터링) 긴급신고 공동운영 체계 컨트롤 타워(Hub) 역할 수행,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24시간·365일 무중단 운영
 - * 1분 이상 접수 지연 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접수 독려 조치('24년 2,562건)
- (주요성과: 골든타임 확보)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신고정보 연계 공유로 신고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의 신고 처리 시간 대폭 단축



참고 2

항구에 매어둔 선박의 화재 대응절차¹⁸⁾

※자료: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227

선박화재 대응절차

1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1.1 선박은 여객선, 어선, 화물선, 유조선, 기타의 선박으로 분류한다.
- 1.2 소화작업을 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내부구조 구획 및 창 등 개구부가 없어 건물의 지하실과 같이 활동에 장애가 많다.
- 1.3 선체의 동요, 경사 등으로 주수에 의한 전복 위험이 크다.
- 1.4 선박내부에 고열, 짙은 연기나 화재가스가 충만해 인명위험이 크다.

2 현장대응절차

- 2.1 대부분의 선박은 기관실, 객실, 취사실, 화물창 등 복합용도 공간으로 화재 시 피난, 소화, 인명구조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 관계자와의 협력과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 2.2 대형 선박의 경우 진입구가 협소하고 내부 구조가 복잡하므로 진입경로 및 방향을 사전에 숙지하며 관계자의 협조(정보)를 받아서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내부 진입 전에 비상시 탈출로를 명확히 한다.
- 2.3 선박화재 시 상황실에서는 관계기관(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의 선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한다.
- 2.4 선박관계자의 협조(대부분 선박 입구 양현에 화재제어도가 있음)를 받아 선박구조(진입로)와 소방용 설비, 적재물 및 구조대상자 등 제반 정보를 입수한다.
- 2.5 파괴할 때에는 정면을 피하고 분무주수로 지원하며 진입할 때에는 화염의 분출에 유의하고 풍상 또는 풍향 측으로 진입한다.
- 2.6 방수에 의한 선체의 경사 또는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자와 협의하여 배수펌프 작동 등 배수 조치한다.

18) 출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227. 선박화재 대응절차

3 구조활동

- 3.1 소방대는 내부에 진입할 때 짙은 연기, 열기가 없어도 유독가스,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체류하므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복수대원으로 활동한다.
- 3.2 소방대는 진입 전에 탈출시간을 확인하고 진입 후에는 시간 경과, 공기용기의 잔량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 3.3 대형 선박의 경우 내부구조가 복잡하므로 진입 경로 및 방향을 착각할 수 있으므로 탈출로를 명확히 한다.

4 안전조치

- 4.1 선박의 구조는 선수부(창고), 중앙부(객실, 창고), 선미부(기관실, 조타실, 휴식공간)로 나누어 3도 형선이 기본이며 발화장소별 적합한 소방활동과 인명대피 대책을 강구한다.
- 4.2 소방대는 트랩 등을 이용하여 승선할 때 피난자와의 충돌, 실족, 바다로의 추락에 주의한다.
- 4.3 소방대는 갑판 상에 와이어로프, 그물, 가설물, 트랩, 사다리 등이 많기 때문에 충돌에 유의한다.
- 4.4 소방대는 기관실에 진입할 때 고온의 엔진, 스팀의 분출 등으로 인한 열상에 대비하고 공기 호흡기의 면체, 호스 등의 장비파손에 주의한다.
- 4.5 소방대는 해치(hatch)를 개방할 때 역화(backdraft) 현상에 의한 화염의 분출에 대비하여 정면을 피하고 엄호주수를 실시한다.
- 4.6 소방대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가동할 때 내부진입요원의 전원 탈출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종류별 대응절차

- 5.1 여객선
 - 5.1.1 소방대는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 5.1.2 소방대는 독립행동을 피하고 선장과 연락 후 전술행동을 결정한다.
 - 5.1.3 여객선 화재진압은 분무주수를 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고발포 주입이 효과적이다.
 - 5.1.4 소방대의 무리한 출입문 개방이나 국부파괴는 연기나 열의 분출 위험이 있다.
- 5.2 화물선
 - 5.2.1 화물선 화재진압은 수밀화된 통로와 간벽이 많아 화점 확인이 매우 곤란하다.
 - 5.2.2 화재진압 시 배연효과가 떨어지고 연기, 가스 등이 충만하여 시계가 불량하다.
 - 5.2.3 선내의 소화작업은 곤란하고 연소속도는 일반적으로 완만하다.
- 5.3 유조선
 - 5.3.1 유조선 화재진압은 소화 후에도 가연성 가스가 잔존하므로 조명기구나 발전기의 불꽃 등에 의해 재발화되지 않도록 환기를 하고 상측에서 활동한다.
 - 5.3.2 화재의 열에 의해 선체가 팽창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기름이 유출되면 화재 면적이 확대되므로 주의한다.
 - 5.3.3 유조선 내의 유류가 유출하는 경우 연안시설물 및 주변에 있는 타 선박에의 연소 확대 저지 및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다.

5.4 항구 안에 매어둔 소형선박

- 5.4.1 정박된 소형선박은 해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유동성이 있어 소방활동 시 추락 등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 5.4.2 기관실 및 연료탱크 등은 선박 하부에 FRP로 덮여 있어 화점 방수 시 소화수 침투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세에 따라 전술을 결정한다. ↵
- 5.4.3 상호 결박(계류)된 FRP 재질의 선박들의 경우 해풍으로 인해 인접 선박으로 화염이 확산되므로 화재진압 시 단시간에 많은 소화용수가 필요하다.
- 5.4.4 화재선박을 분리할 경우 해류로 인한 인접 선박으로의 이동을 차단하여 2차 연소 확대를 방지한다.

참고 3

해상에서의 선박화재 대응절차

※ 자료: 해양경찰청

1-5 화재 사고 대응

관련근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18조
참고자료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해양경찰 실무 표준교과서(4.수색구조실무) 해양선박 항공기 사고 표준 대응 절차 (SOP)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구조대응계 ☎ 032-835-2245

사고인지 정보파악

- 신속한 필요 정보확보
- 원인파악 및 초기진압
- 인근선박 등 구조요청

- ☑ 화재사고 신고 접수(필요 정보를 신속히 파악)
 - * 발생시간·위치, 승선인원, 피해정도 등 정보파악
- ☑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초기화재진압 권고
 - * 발화 원인과 장소를 파악, 초기화재진압 최대 집중
- ☑ 인근선박 도움 요청·구조세력 출동 지시

안전확보 사고조치

- 승선원 안전확보 등
- 2차 사고 대비·대응

- ☑ 승선원 확인 및 안전확보 등 조치사항 권고
 - * 전원 및 통풍구 차단, 격실문 폐쇄 등 화재 확산 방지
 - ** 안전장구 착용 및 유독가스 질식 등 사고대응 조치
- ☑ 2차 사고 방지 및 돌발상황 대비·대응
 - * 연료탱크는 폭발 위험성이 높음으로 주의
 - ** 선체가 기울어지면 전복·침몰 위험성이 증가
 - *** 대피 상황 시 생존에 필요한 도구만 휴대할 것

화재진압 수색구조

- 적절한 진화·소화재 사용
- 인명구조·응급환자 처치

- ☑ 안전확보 및 효과적인 화재진압
 - * 소화수는 안전장비 등 착용, 화재진압 실시
 - ** A, B, C, D급 유형을 파악, 적합한 소화작업 진행
-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등
 - * 화재선박 고립자·익수자 수색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